

第96回(臨時會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運營委員會會議錄

第1號(附錄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- 1. '99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(案) 作成의 件 1面

1. 1999년도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(안)작성의 건

의 안 번호	699
-----------	-----

제안일 : 1999. 11. 19.
제안자 :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운 영 위 원 회

1. 提案理由

- 종로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 의회활동과 2000년도 예산(안)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,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게 하여
-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

2. 主要骨子

- 감 사 기 간 : 1999. 12. 4(1일간)
- 감사대상기관 : 종로구의회 사무국
- 감사반의편성 : 흥 기 서 의원 외 8인
- 감 사 장 소 : 종로구의회 소회의실

3. 承認(案) : 별 첨

4. 關聯根據

- 지방자치법 제36조,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
-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

1999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(案)

1. 監査의 目的

- 종로구의회 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 의회활동과 2000년도 예산(안)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,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여 행정의 적정성 및 능률화를 기할 수 있게 하여
-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사무국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

2. 監査期間 : 1999. 12. 4(1일간)

3. 監査實施 對象機關 : 종로구의회 사무국

4. 監査班 編成

- 위 원 장 : 홍 기 서
- 간 사 : 김 복 동
- 감사위원 : 정 태 순, 이 헌 구, 유 찬 중, 이 형 술, 오 필 근, 김 이 환, 김 정 대

5. 監査日程 및 場所

- 감사일시 : 1999. 12. 4.
- 감사장소 : 종로구의회 소회의실

6. 監査方法

가. 감사방법

- 현장확인 또는 보고·서류의 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증언
- 업무현황보고 청취, 질의·답변

나. 주요 감사내용

- 1999년도 예산집행 사항
- 의안처리현황 및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
- 회의록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
- 기타 의정활동 지원사항
-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

다. 감사진행순서

- 개회선포 및 위원장 인사
- 의사일정 상정
- 관계공무원 선서
- 업무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·답변
- 감사종료 선언

라. 감사자료 및 관계인의 출석요구

- 보고 사항
 - 보고내용 : 업무현황
 - 보고일시 : 1999. 12. 4
 - 보고장소 : 감사장

- 서류(자료)제출 요구
 - 서류(자료)제출 요구사항 : '99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
 - 제출일시 : 1999. 11. 24
 - 제출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
 - 제출부수 : 40부

- 관계공무원 출석요구
 - 출석일시 : 1999. 12. 4
 - 출석공무원 : 사무국장
 - 출석장소 : 감사장

7. 監査의 限界

-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대한 사항 금지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6)
-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7)

-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할 수 없음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8)

8. 行政事項

가. 보고·서류의 제출요구

- 보고·서류의 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 확정 후 각 감사위원의 요구사항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, 정리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
- 위원장은 의결을 거친 보고·서류의 제출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사무국장에게 제출요구(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까지 도달되도록 송부)토록 함

나.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: 사무국장

다. 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

-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, 작성하여 위원회 의결로 확정
- 감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
 - 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
 - 감사실시 경과 및 주요 감사실시 내용
 - 감사결과 처리의견 : 시정요구사항, 건의사항
 - 기타 특기사항 및 중요 근거서류

1999. 11.

수 신 : 종로구의회의장

제 목 : 관계공무원 출석 의결요구

1.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.

가. 출석일자: '99. 12. 4

나. 출석대상: 관계공무원(의회사무국장)

다. 출석요구이유: '99년도 업무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